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6
----------	-----

2021. 11. 30.(화)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1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2021년 11월 23일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 가. 제안이유

-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 등 학생수련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의 교직원복지회관과 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교직원복지회관, 영동휴양소 및 쌍곡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의 일부로 둠(안 제20조)
- 교직원복지회관과 휴양소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서 삭제함(안 제47조, 제51조 및 제53조, 별표 11, 12)
- 그 밖의 수정·보완 사항(안 제21조제2항, 부칙 제2조)
  - 1)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분원장에 관한 사항 신설
  - 2) 기구 이관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학생수련원의 아웃도어 교육 등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의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쌍곡 및 영동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학생수련원에서 교직원복지회관 및 휴양소의 관련 시설을 보다 쉽게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아웃도어 스쿨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재 학생수련원에서 청주 학생수영장과 제천분원(안전체험관, 청풍마음쉼터), 옥천분원 등 여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주 교직원 복지회관과 쌍곡 및 영동휴양소까지 운영할 경우 기관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와 교직원 복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단서 중 “33”을 “33,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 중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휴양소를”을 “학생회관을”로 한다.

제51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휴양소,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에서 별표 8”를 “도서관, 제천학생회관 의 사용료 징수금액은 각각 별표 5,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8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수영장(전용)란 다음에 휴양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구분			징수액	비고	
휴양시설	객실 사용료	4~6인실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20,000원	◦ 1실 1박 기준금액임
			기타	30,000원	
		10인실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30,000원	
			기타	40,000원	
	시설 사용료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무료	◦ 1일 기준 ◦ 100명 초과 시 초과하는 50명당 30,000원씩 가산 ◦ 냉난방에 소요된 연료 및 전기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기타	50,000원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설비 등의 사용·허가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 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휴양소”를 “충청북도학생수련원”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설치) ① (생략)</p> <p>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59번길 33에 둔다.</p>	<p>제2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33,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호수로 990,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p>
<p>제21조(원장) (생략)</p> <p>&lt;신 설&gt;</p>	<p>제21조(원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u>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휴양소</u>를 둔다.</p>	<p>제47조(설치) ----- ----- 학 <u>생회관</u>을 ----- ---</p>
<p>제51조(교직원복지회관) ① <u>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직원복지회관을 둔다.</u></p> <p>② <u>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u></p>	<p>&lt;삭 제&gt;</p>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1과 같다.

제53조(휴양소) 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휴양소를 둔다.

② 휴양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2와 같다.

<삭 제>

[별표] 11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51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삭 제>

[별표] 12

휴양소의 명칭과 위치(제53조 관련)

명 칭	위 치
영동휴양소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쌍곡휴양소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

<삭 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미미하여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국 행정과장 음영운

# 관 계 법 령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 5. 8., 2018. 2. 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